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7. 17.(수) 11:00 < 7.18.(목) 조간 > 배포 2024. 7. 17.(수)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방법 및 절차 효율화

- 지재권 분쟁 증가 대응, 신속하고 공정한 입증방식 마련

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(위원장 이재민)는 특허,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 수출·수입 행위 증가에 대응하여 불공정무역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 및 운영규정*을 2024.7.18부터 개정·시행한다고 밝혔다.

*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,「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

주요내용으로는 ①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 '직전 3개 사업연도' 에서 '직전 3년' 으로 하여 상위법령*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.

*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과징금의 산정방법)

* 예) 조사개시결정일이 '24.7.18. 경우,
조사대상기간을 (개정 전)'21.1.1 ~ '24.7.17 → (개정 후)'21.7.18 ~'24.7.17

②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증거수집 방식으로써 제출서류를 근거로 하는 현행 조사방식을 개선하여 관련자 진술조서와 사실확인 서약서에 의한 조사방식을 추가하였다.

③ 조사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제출 및 자료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술쟁점 및 영업비밀에 관한 당사자간의 공방을 활성화하고,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.

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"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은 쟁점이 복잡 및 다양해지고, 분쟁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" 라면서 "무역위는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방법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"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무역조사실 불공정무역조사과	책임자	과 장	정재훈 (044-203-5880)
		담당자	사무관	김명화 (044-203-588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첨부 1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(고시)」 개정 주요내용

구분	현행	개정(안)	비고
조시대상기간 제2조(조사대상기간)	■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원칙	■조사개시 결정일 전 3년간을 원칙	**개정**
주심위원 지정 제4조(주심위원)	■조사개시 결정을 할 때에는 주심위원을 지정	■조사 개시가 된 때에는 주심위원을 지정 가능 ■지정된 주심위원은 임기 만료 등에 따라 변경 가능	**개정**
안건 재검토 대상 제4조(주심위원)	■담당조사관에게 보완 지시	■무역조사실에 보완 지시	**개정**
감정기간 산입 제외 제12조(감정인의 지정)	-	■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기간에서 산입 제외	**신설**
자료·물건 등 임의제출 제13조(자료물건의 제출명령)	-	■당사자 임의 제출 가능	**신설**
조사관 제척, 회피 등 제35조(담당조사관의 제척, 회피 등)	-	■담당조사관이 해당 사유가 있을 경우 제척, 회피 등 가능	**신설**
증거입증 진술조서 제11조(의견청취) 제14조(현지조사)	-	■의견 청취, 현지조사 과정상 담당조사관이 진술조서 작성	**신설**
서약서 제출 제14조의2(서약서)	-	■사실관계 또는 제출된 증거물에 대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서약서 징구	**신설**
재조사 요건 제20조(재조사명령)	-	■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원처분이 취소된 경우도 재조사 가능	**신설**
조사 자료의 공개 제31조(조사관련 자료의 공개)	■영업상 비밀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 가능	■영업상 비밀자료에 해당하지 않고,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허용	**개정**
주요 서식 별지3호	■별지3호서식 영치조서	■별지3호 서식 영치조서 임의제출/제출명령 구분	**개정**
주요 서식 별지8호	-	■진술조서 양식	**신설**

첨부 2 「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(고시)」 개정 주요내용

구분	현행	개정(안)	비고
기술설명회 개최시기 제4조(기술설명회 개최 결정)	■최종 판정 직전 월에 개최 원칙, 다만, 위원회 일정, 참가자의 편의 고려 변경 가능	-	**삭제**
기술설명회 주재 권한 제10조(기술설명회 주재)	■주심위원이 주재	■주심위원이 주재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위원장이 주재 가능	**개정**
영업비밀 진술 절차 제13조(의견진술 등)	-	■상대측의 일시 퇴장 후 그 진술 또는 답변 청취	**신설**
영업비밀 자료관리 제19조(후속조치 등)	-	■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을 별도 첨부	**신설**
보완자료 제출기한 제19조(후속조치 등)	■기술설명회 후 개최 후 7일이내 증빙자료 첨부	■기술설명회 후 개최 후 10일이내 증빙자료 첨부	**개정**